

(2023학년도 제13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시: 2023. 10. 19.(목), 14:00 ~ 16:00
- 장소: 혁신지원팀 회의실(문화관 3층, 301호)
- 심의 안건

안 건	소관부서
1.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건	교학팀
2. 「교육혁신위원회규정」 개정 건	IR센터
3. 「교육만족도 조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 건	IR센터
4. 「장애학생지원규정」 개정 건	장애학생지원센터
5. 「업무분장규정」 개정 건	장애학생지원센터
6. 「위임전결규정」 개정 건	장애학생지원센터
7. 「업무분장규정」 개정 건	기획예산팀
8. 「위임전결규정」 개정 건	기획예산팀
9. 「직제규정」 개정 건	기획예산팀
10. 「RIS 추진단 운영 규정」 제정 건	기획예산팀

○ 추후 일정

- 교무위원회 심의: 2023.10.24.(화)
- 법인 이사회(직제규정 해당): 2023.10.26.(목)
- 차기 규정심의위원회: 2023.11.9.(목) 14:00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없음			
대학평의원회	• 해당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제13조(학과, 전공변경) - 학생이 학과변경을 희망하나 지도교수가 허락해 주지 않아 민원 발생(외국인 학생의 이탈 발생 가능) 재학생의 이탈 방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함 - 현재의 대학원 학과, 전공변경 규정은 학부의 학사운영규정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함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9조(모집단위간 이동절차) 모집 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집단위간 이동신청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학과(부)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0조(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 변경) - 현행 규정은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외국인 학생의 경우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교수 선정 후 논문 지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로 지도교수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교수가 변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한 상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 개정(안) 신설이 필요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2023.09.15.)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3조(학과, 전공변경) - 학과 전공 변경 시 변경신청서 동의 구분 → 기존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동의에서 지원 학과(전공) 지도예정교수의 동의로 변경 • 제70조(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 변경) - 기존 규정 개정 외에 학생이 변경을 원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기대효과	•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3조(학과, 전공변경) ①학과,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3차 학기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u>지도교수 및 학과(전공) 주임교수</u>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학과(전공)변경신청서를 등록 기간 내에 교학팀에 <u>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70조(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 변경)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질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학생은 지도교수와 전공(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소정의 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항 신설)</u>	제13조(학과, 전공변경) ①학과,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3차 학기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u>지원 학과(전공) 지도예정교수</u>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학과(전공)변경신청서를 등록 기간 내에 교학팀에 <u>제출하여야 한다.</u> 제70조(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u>②학생이 변경을 원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육만족도 조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교육만족도 조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를 위하여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u>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IR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량개발인증센터장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 부위원장은 IR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동일) ②위원회는 <u>위원장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 IR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인 된다.</u> ③ ~ ④ (현행과 동일)
(신설)	<u>부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육혁신위원회규정」		
입안형태	☐ 제 정		

「교육혁신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혁신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IR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량개발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위원 신설), 학사관리팀장, 기획예산팀장, 교양교육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내·외부 전문가와 학생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혁신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IR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량개발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평생학습지원센터장, 학사관리팀장, 기획예산팀장, 교양교육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내·외부 전문가와 학생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업무분장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현재 업무에 맞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2022학년도 행정부서 정기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9조(장애학생지원센터)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맞게 전문 개정		
기대효과	• 업무 분장 세분화로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제공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9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u>1.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u> <u>2. 장애학생 지원 및 시설물/용품 관리에 관한 업무</u> <u>3. 대내외 평가지원에 관한 업무</u> <u>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u>	제19조(장애학생지원센터) (현행과 같음) <u>1. 장애학생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u> <u>2.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 및 시설물, 용품 관리에 관한 업무</u> <u>3. 장애학생도우미 선발·지원 및 교육에 관한 업무</u> <u>4. 장애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업무</u> <u>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관한 업무</u> <u>6.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에 관한 업무</u> <u>7.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u> <u>8.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u> [전문개정 2023.00.00.]
(신설)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위임전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현재 업무에 맞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전결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2022학년도 행정부서 정기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0조(전결사항) [별표2] 단위업무의 세분화 및 명확화		
기대효과	•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 세분화로 운영성과 기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2023.1.30., 2023.6.9., 2023.7.12.)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2023.1.30., 2023.6.9., 2023.7.12., 2023.00.00.)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장애학생지원센터					[별표 2] 장애학생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센터장				처장	센터장
1. 운영계획 수립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1. 장애학생지원 계획 수립	장애학생지원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 지원 및 시설물 / 용품관리			○		장·단기 발전계획	○		
3. 평가	대내외 평가지원			○	2.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및 시설물, 용품 관리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고사업 수행	○		
						장애학생 대상 교육지원 수요조사			○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계획수립 운영		○	
						진로취업캠프 운영 및 결과보고		○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관리			○
					3. 장애학생도우미 선발·지원 및 교육	장애학생도우미 지원제도 운영		○	
						장애학생 및 도우미 학생 간담회 운영			○
					4. 장애학생 상담 및 지원	심사청구 관련 상담 업무		○	
						장애학생 간담회 운영			○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실태평가 지표관리			○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관련 유관부서 협력 강화			○
					6. 장애인식 개선 교육사업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계획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및 결과 보고		○	
					7. 위원회 운영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운영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		○	
					8.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장애학생지원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2022학년도 행정부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임기 및 의결 기준 부재로 신설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2022학년도 행정부서 정기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6조(구성) 위원 임기에 관한 내용 신설 • 제8조(회의), 제9조(회의록) 조 신설			
기대효과	• 위원회 활동 기간 보장 및 회의 심의결정 수립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장애학생지원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장애학생지원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지원조직)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제2조(지원조직)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학생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장애학생의 범위) (현행과 같음)
제 2 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 2 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4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장애학생지원센터) (현행과 같음)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 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5조(기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되고, 센터장과 장애학생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항 신설)	제6조(구성) ①~③현행과 같음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센터의 직원이 간사가 된다. (조 신설)	제7조(간사) (현행과 같음)
(조 신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신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4장 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신청) ①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대학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제공할 것을 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원신청)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심사청구) ①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9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총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별지서식 제1호)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별지서식 제2호)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총장 및 교직원 등은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심사청구) ①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총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업무분장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예산팀	관련부서	특성화지원센터, 평생학습지원센터, 성인학습자지원팀, 통합행정실
부서간 협의 결과	• 관련부서 협의 완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정부재정지원사업 추진 전담부서 신설 및 업무조정 - 사업수행 부서의 업무 정립		
관련근거 (관계법령)	• 직제규정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지방대학 활성화사업 추진 기구 업무 재정립 - 제5조의5(특성화추진단) 삭제 · 특성화추진단 산하에 특성화지원센터 신설로 업무분장 내역 삭제 - 제5조의20(특성화지원센터) 부서 업무분장 내역 신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수행 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 부여 - 제5조의19(평생학습지원센터) 부서 업무분장 내역 신설 - 제11조의2(성인학습자지원팀) 부서 업무분장 내역 신설 - 제24조의4(통합행정실) 부서 업무분장 내역 신설		
기대효과	• 각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 •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 지원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u>제5조의5(특성화추진단) 특성화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u> <u>1.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이하 “특성화사업”이라 한다.) 대학부문 사업 수행</u> <u>2. 특성화사업 대학 및 사업단 부문 사업 지원, 평가 및 관리</u> <u>3. 특성화사업 관련 위원회 지원</u> <u>4. 기타 추진단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u>	<u>제5조의5(특성화추진단) <삭제 2023.00.00.></u>
(조 신설)	<u>제5조의19(평생학습지원센터) 평생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u> <u>1. 평생학습 교수법 개발 및 보급</u> <u>2.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지원 및 성과 분석</u> <u>3.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u> <u>4.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진단 및 연구</u> <u>5. 기타 성인학습자 교수학습 및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u> <u>[본조 신설 2023.00.00.]</u>
(조 신설)	<u>제5조의20(특성화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u> <u>1.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u> <u>2. 특성화 학과 사업 운영 행정지원</u> <u>3.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예산편성, 사업비 집행 및 관리</u> <u>4.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평가지원 및 모니터링</u> <u>5. 사업과 관련한 세부 집행지침 수립 및 운영</u> <u>6.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u> <u>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u> <u>[본조 신설 2023.00.00.]</u>

현행	개정
(조 신설)	제11조2(성인학습자지원팀) <u>성인학습자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u> <u>1. 성인학습자 학교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u> <u>2. 성인학습자 수강신청 및 변경 지원에 관한 업무</u> <u>3. 성인학습자 성적조회 및 정정 지원에 관한 업무</u> <u>4. 성인학습자 학적 변동(휴학, 자퇴, 복학, 재입학 등) 지원에 관한 업무</u> <u>5. 성인학습자 전과 지원에 관한 업무</u> <u>6. 성인학습자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u> <u>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u> [본조 신설 2023.00.00.]
(조 신설)	제24조4(통합행정실) <u>통합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u> <u>1. 미래융합대학 교육과정 편성, 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2. 미래융합대학 학사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u> <u>3.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u>4.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u> <u>5.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운영 인력 채용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u> <u>6.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지원</u> <u>7. 평생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 기관 및 산업체 협력활동 지원</u> <u>8. 그 밖에 평생교육지원 체제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u> [본조 신설 2023.00.00.]
(신설)	부칙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위임전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2023.1.30., 2023.6.9., 2023.7.12.)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2023.1.30., 2023.6.9., 2023.7.12., <u>2023.00.00.</u>)
(신설)	부 칙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신설)	[별표 2] 특성화지원센터																																																												
	<table><tr><th rowspan="2">단 위 업 무</th><th rowspan="2">세 부 업 무</th><th rowspan="2">총장</th><th colspan="2">전결권자</th></tr><tr><th>단장</th><th>센터장</th></tr><tr><td rowspan="2">1. 운영계획</td><td>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 수립</td><td>○</td><td></td><td></td></tr><tr><td>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세부 집행지침 수립</td><td></td><td>○</td><td></td></tr><tr><td rowspan="3">2. 예산편성 및 사업 관리</td><td>예산편성</td><td></td><td>○</td><td></td></tr><tr><td>주요 업무추진 및 조정</td><td></td><td>○</td><td></td></tr><tr><td>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평가지원 및 모니터링</td><td></td><td>○</td><td></td></tr><tr><td rowspan="2">3. 위원회 운영</td><td>위원 위촉</td><td>○</td><td></td><td></td></tr><tr><td>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td><td></td><td>○</td><td></td></tr><tr><td rowspan="2">4. 자료 작성 및 제출</td><td>사업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td><td>○</td><td></td><td></td></tr><tr><td>각종 자료 작성 및 제출</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단장	센터장	1. 운영계획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 수립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세부 집행지침 수립		○		2. 예산편성 및 사업 관리	예산편성		○		주요 업무추진 및 조정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평가지원 및 모니터링		○		3.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			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		○		4. 자료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각종 자료 작성 및 제출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단장	센터장																																																									
1. 운영계획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 수립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세부 집행지침 수립		○																																																										
2. 예산편성 및 사업 관리	예산편성		○																																																										
	주요 업무추진 및 조정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평가지원 및 모니터링		○																																																										
3.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																																																											
	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		○																																																										
4. 자료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각종 자료 작성 및 제출		○																																																										
(신설)	평생학습지원센터																																																												
	<table><tr><th rowspan="2">단 위 업 무</th><th rowspan="2">세 부 업 무</th><th rowspan="2">총장</th><th colspan="2">전결권자</th></tr><tr><th>본부장</th><th>센터장</th></tr><tr><td rowspan="2">1. 평생학습 교수법 개발 및 보급</td><td>평생학습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평생학습 교수법 연구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 rowspan="3">2.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지원 및 성과 분석</td><td>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평생학습 수요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평생학습 교수학습 성과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 rowspan="3">3.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td><td>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및 지원계획 수립</td><td>○</td><td></td><td></td></tr><tr><td>성인학습자 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성인학습자 학습 멘토링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 rowspan="2">4.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진단 및 연구</td><td>성인학습자 학습역량 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성인학습자 학습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5. 성인학습자 만족도 조사</td><td>[성인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본부장	센터장	1. 평생학습 교수법 개발 및 보급	평생학습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교수법 연구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지원 및 성과 분석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수요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교수학습 성과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3.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및 지원계획 수립	○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성인학습자 학습 멘토링에 관한 사항			○	4.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진단 및 연구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성인학습자 학습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5. 성인학습자 만족도 조사	[성인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본부장	센터장																																																									
1. 평생학습 교수법 개발 및 보급	평생학습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교수법 연구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지원 및 성과 분석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수요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교수학습 성과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3.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및 지원계획 수립	○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성인학습자 학습 멘토링에 관한 사항			○																																																									
4.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진단 및 연구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성인학습자 학습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5. 성인학습자 만족도 조사	[성인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현행	개정(안)				
(신설)	성인학습자지원팀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 수강신청	수강신청 및 변경 업무지원			○
	2. 성적조회	성적조회 및 정정 업무지원			○
	3. 학적 변동	학적 변동(자퇴, 휴학, 복학, 재입학 등) 지원			○
	4. 전과	전과 지원			○
	5. 제증명 발급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지원			○
(신설)	미래융합대학 통합행정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단장 (부총장)	학장 실장
	1. 교육과정	미래융합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지원			○
		미래융합대학 비교과 및 비학위 프로그램 운영			○
	2. 학사관리	미래융합대학 학사관리 지원			○
	3. 운영계획	평생교육체계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		
		평생교육체계지원사업 운영지침 수립		○	
	4. 예산편성	예산안 편성 및 관리		○	
	5. 인력운용	미래융합대학 초빙교원 채용 계획 수립	○		
		미래융합대학 관련 부서 직원 채용 계획 수립	○		
		미래융합대학 인력 관리			○
	6. 위원회	위원 위촉	○		
		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			○
	7. 대외협력	유관기관 및 산업체 협약 체결 지원			○
		대외 협력활동 참여			○
	8. 기타 업무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기타 미래융합대학과 관련된 업무			○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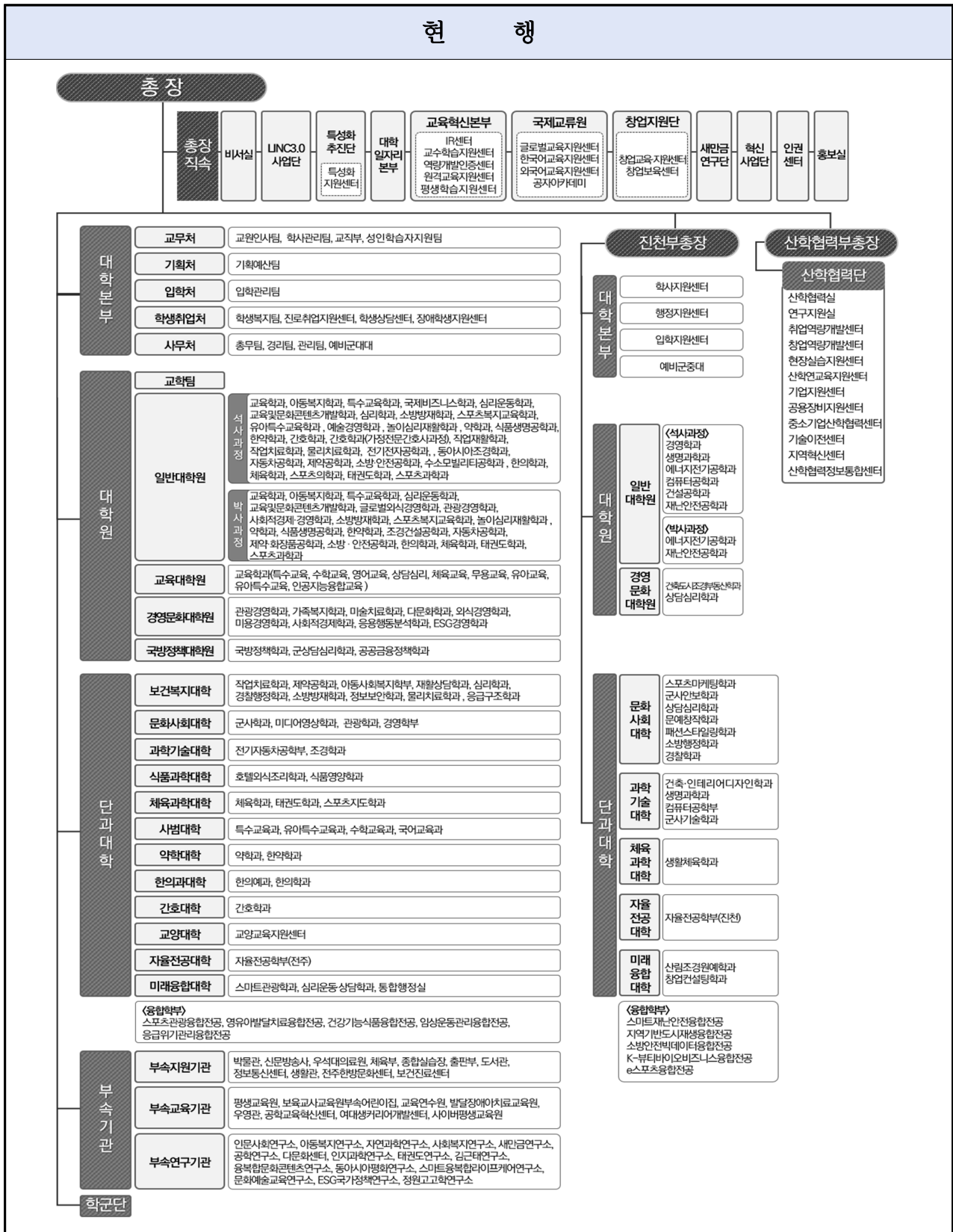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6조의 2(특별기구) 특별기구에 혁신사업단 (추진단 신설)을 두고 총장직속으로 운영한다.	제26조의 2(특별기구) 특별기구에 혁신사업단, RIS 추진단 을 두고 총장직속으로 운영한다.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00.00.)
(신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3.00.00.)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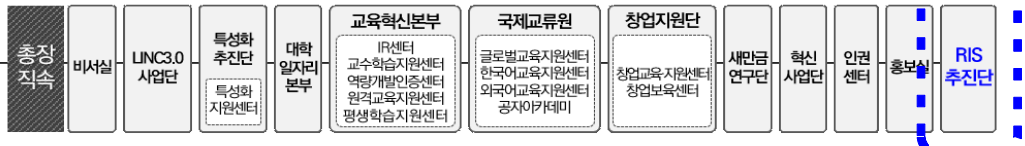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현행



개 정(안)

총 장



대학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성인학습자지원팀
	기획처	기획예산팀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대학원	교학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과정), 직업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지역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 안전공학과, 수송모빌리티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경영문화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 다문화학과, 외식경영학과, 미용경영학과, 사회경제경영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심리학과, 공공금융정책학과

단과대학	보건복지대학	직업치료학과, 제약공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재활상담학과, 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문화사회대학	군사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경영학부
	과학기술대학	전기자동차공학부, 조경학과
	식품과학대학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양대학	교양교육지원센터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미래융합대학	스마트관광학과, 심리운동 상담학과, 통합행정실
	《융합학부》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실습장,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방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특교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이버평생교육원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과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근태연구소,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정원고교학연연구소

부속기관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실습장,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방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특교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이버평생교육원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과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근태연구소,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정원고교학연연구소

학군단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대학본부	학사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입학지원센터	
	예비군중대	

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에너지전기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경영문화대학원	간혹도사조양동심학과, 상담심리학과
	문화사회대학원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단과대학	문화사회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기술대학	건축·엔지니어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미래융합대학	신뢰조경원예학과, 창업컨설팅학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비메이팅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RIS 추진단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예산팀	관련부서	RIS 참여학과
부서간 협의 결과	○ 관련부서 협의 완료 ○ 교무위원회 논의 완료 (10.10.)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참여에 따라 사업 지원조직인 RIS추진단의 신설함으로써 사업 핵심 분야별 교육혁신, 기술 고도화, 신산업 육성의 성과 창출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직제규정 개정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RIS 추진단 운영 - RIS 추진단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RIS 추진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RIS 지원센터 / 3대 핵심분야 / 자율과제 - RIS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재정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기대효과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의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의 효과적 운영 지원으로 성과 창출 기여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RIS 추진단 운영 규정」(안) 전문 1부.		

RIS 추진단 운영 규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6조의 2에 따라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이하 “지역혁신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RIS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목적 및 기능) ① 추진단의 목적은 본교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교의 참여 학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혁신사업 참여 학과 간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지원
2. 지역혁신사업의 공유대학 참여를 위한 학사제도 개편 지원
3. 지역혁신사업의 공유대학 참여를 위한 교원과 학생 지원
4. 지역혁신사업의 소과제 주관학과 또는 참여 학과의 지원
5. 지역혁신사업의 자율과제 추진 지원
6. 지역혁신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환류 지원
7. 기타 지역혁신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진단에는 지역혁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RIS 추진단장을 둔다.

1. 추진단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임면권자가 임명하고 추진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추진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RIS 지원센터와 핵심분야(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자율과제로 구성한다.

1. RIS 지원센터

- 가. RIS 지원센터에는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 나. RIS 지원센터 직원의 처우는 본 대학과 지역혁신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다. RIS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핵심분야

- 가. 각 핵심분야에는 책임교수를 둔다.
- 나. 각 핵심분야별 책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다. 각 핵심분야별 책임교수의 임기는 사업 기간 내로 한다.

3. 자율과제

- 가. 각 자율과제에는 총괄책임자를 두며, 과제 공모 당시 책임자로 정한다. 단, 총괄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나. 각각의 자율과제는 과제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업무분장) ① RIS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추진단 행정 지원
2. 대학교육혁신 운영 및 대학 체제 개선 지원
3. 핵심 사업 분야 성과 공유 업무
4. 교육환경개선 및 기자재 구매 지원

5. 대내외 협력 지원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
- ② 핵심분야별 책임교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핵심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핵심분야별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개발 기획
 3. 핵심분야별 인력양성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4. 교육환경개선 및 기자재 구매 계획 및 운영
 5. 핵심분야별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6. 핵심분야별 사업성과 관리 및 환류
- ③ 자율과제의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자율과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2. 자율과제 프로그램 운영
 3. 자율과제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4. 자율과제 사업성과 관리 및 환류

제3장 위원회 및 구성

- 제5조(사업추진위원회)** ① 추진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추진단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③ 진천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핵심분야별 책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장 및 관련 행정팀(실)장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도 있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위촉)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추진단 운영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RIS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한다.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 제6조(예·결산)** ① 회계연도는 지역혁신사업 회계 지침을 준용하여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역혁신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5장 기타

- 제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혁신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직제규정 시행일과 동일적용)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